

충청북도 자유행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노금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규정 취지에 맞게 조례명 변경(안 제명)
 - (현행) 「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」
 - (개정) 「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」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지원된 경비의 목적 사용 지도·점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모범 자율방범단체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자율방범단체 원활한 지원 및 지도·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)

5. 검토 의견

가. 개정 필요성

- 현행 「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」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2016년 5월 24일 제정하여 자율방범연합회가 수행하는 3가지 활동(표-1 참조)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, 이후 2020년 4월 10일 1차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(표-1 참조)하여 운영하였음.

[표-1] 현행 조례 규정상 연합회 지원 대상 사업

구분	2016. 5. 24. 제정	2020. 04. 10. 1차 개정
내용	<p>제3조(지원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각 방범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</p> <p>2. 범죄예방캠페인 등 공익사업</p> <p>3. 자율방범대원 교육사업</p>	<p>제3조(사업) 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[전문개정 2020. 4. 10.]</p> <p>1. 시·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</p> <p>2. 합동 순찰·계도 활동</p> <p>3.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</p> <p>4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</p> <p>5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
- 그러나 현행 조례에 근거한 경비 지원은 시·군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도 차원의 직·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
- 2023. 4. 27일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충청북도 내 자율방범단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취지가 타당함.
-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광역자치단체가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(표-2 참조).

[표-2] 광역자치단체 자율방범대법 반영 조례 제정 현황

(2023.10.31.기준)

연번	지자체	조례	제·개정일
1	전북	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	2023. 03. 03.(제정)
2	경북	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	2023. 07. 13.(전부개정)
3	경남	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	2023. 08. 03.(전부개정)
4	광주	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08. 07.(제정)
5	경기	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08. 07.(전부개정)
6	대전	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	2023. 08. 11.(제정)
7	울산	울산광역시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	2023. 09. 21.(전부개정)
8	인천	인천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09. 27.(전부개정)
9	대구	대구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	2023. 10. 04.(전부개정)
10	충남	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10. 10.(전부개정)
11	부산	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10. 11.(제정)

*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자율방범대법 제정 전인 2019년 9월 30일에 전부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나. 주요 내용

- ‘조례 명’을 ‘자율방범연합회’ 지원에서 ‘자율방범활동’ 지원으로 변경한 것은 자율방범활동의 수행을 자율방범연합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, 법에 따라 도의 경비 등 지원대상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까지 확대되었기에 조례의 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것임.
- ‘안 제1조’는 조례의 목적으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과 관련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기여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함.
- ‘안 제2조는’ 조례에 사용되는 “자율방범활동”, 자율방범단체인 “자율방범대”, “자율방범연합대”, “자율방범연합회”와 “자율방범대원”의 용어를 정의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함.
- ‘안 제3조는’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‘안 제4조’는 자율방범단체에 경비 지원이 가능한 각호 사항을 규정하고, 이 경우 시·군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상에 따라 경비 지원을 구분함.
- ‘안 제5조’는 도지사가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으며, 매년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실적을 평

가하고 지도·점검과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- ‘안 제6조’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,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판단 됨.
- ‘안 제7조’는 도지사가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인 충북경찰청, 시·군 등과 협력에 노력하도록 규정함.
- ‘안 제8조’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단체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현행 「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」의 제명을 조례의 취지 맞도록 「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」로 변경하고, 현행 조례의 내용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개정하여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자율방범연합회만 지원할 수 있었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을 시·군의 자율방범대와 자율방

범연합대까지 확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전체의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5년간 총 19억 9,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므로,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 및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.
- 추가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 및 도 조례와 각 시·군의 조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, 자율방범활동에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.

붙 임: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